'IT중소벤처기업'을 이끄는 파워리더 『신제품(NEP) 인증』

정보통신부는 IT산업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삼아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IT839 정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06년 신제품(NEP) 인증 제도를 도입, IT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기술성 및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과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판로확대 및 홍보,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IT신제품(NEP) 인증제도란

2006년 5월부터 전파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IT신제품 인증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을 평가해 우수한 제품에 신제품인증(NEP)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IT신제품 인증이 가능한 제품은 신기술을 적용, 실용화해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실용화 된 지 3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IT신제품 인증은 인증심사의 전문성과 평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IT분야 기기를 ▲유선통신 ▲네트워크 · 센서 ▲무선통신 · 방송 ▲컴퓨터 · 시스템 ▲SW · 콘텐츠 · 정보보호 ▲부품 · 전자파 등 6개 군의 제품으로 분류 시행하고 있다.

우수신제품의 기술성과 품질을 평가

IT신제품 인증은 신청제품설명서와 특허선행조사서(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원 발행) 등 신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제품설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핵심개발 기술내용, 구조 및 작동원리 등에 대한 신청제품 개요와 기존제품과의 기술성 및 제품성을 비교한 기술적 내용, 개발기간, 개발비, 국산화율 등에 관한 개발이력, 국내외 시장점유율에 대한 제품의 시장정보,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등이다.

● 신제품 인증현황

대상분야	접수	인증			합격률(%)	신기술성	
		계	2006	2007		신기술	기존기술개량
유선통신	9	7	3	4	77	1	6
무선통신	5	4	2	2	80	1	3
네트워크/센서응용기술	5	3	1	2	60		3
컴퓨터 및 시스템	8	6	1	5	75	1	5
S/W 및 콘텐츠/정보보호	37	19	9	10	51		19
응용부품	8	8	3	5	100	1	7
계	73	47	21	26	73	4	41

인증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류 및 인증대상요건 적정성을 검토하여 접수, 인증여부를 심사한다. 인증의 심사단계 및 단계별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제품 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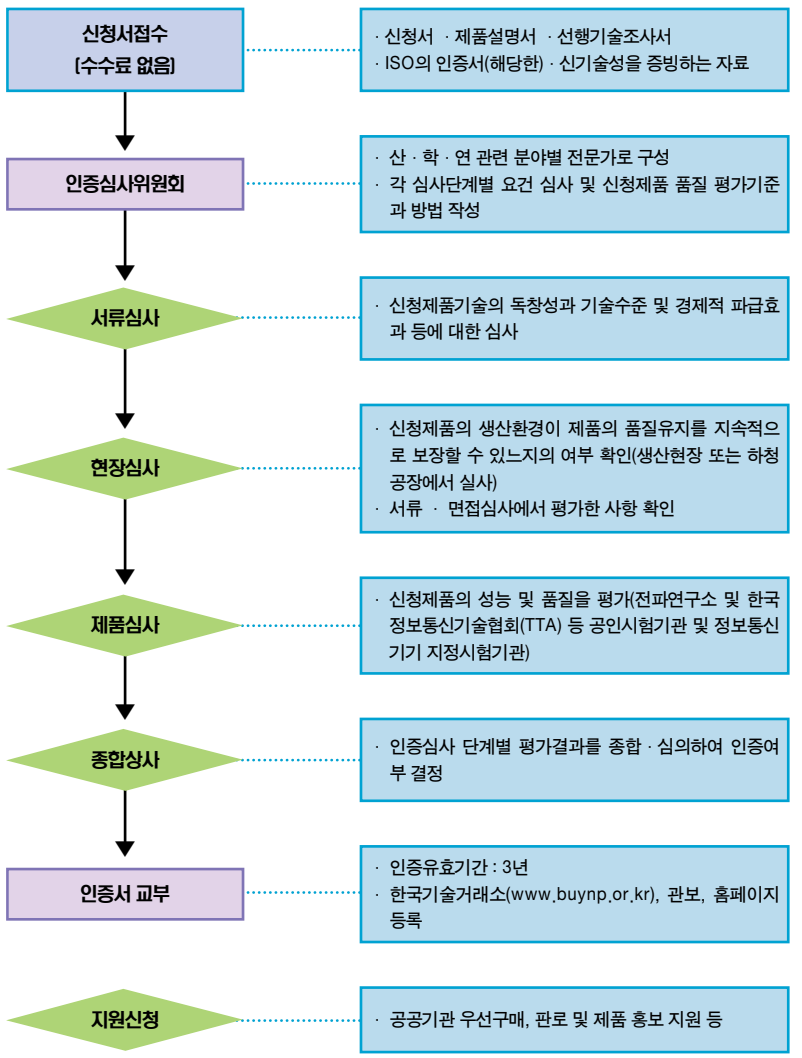

IT신제품 인증심사는 산, 학, 연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의 기술성과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제품의 품질을 보장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다. 또한, 인증된 IT신제품에 대해 인증당시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사후관리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신제품인증에 따른 혜택

정부는 IT중소벤처기업의 협력자로서 인증 받은 신제품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지원사업 등의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에서는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판로확대를 위해 인증제품에 대하여 동일 제품류 구입 시 공공기관의 20%이상 구매를 법에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 · 내외 전시회에 NEP제품 홍보관을 개설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IT신제품 인증은 우리나라 IT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IT중소벤처기업을 직접 찾아가 지원정책의 혁신을 꾀하여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로 거듭날 것이다.

[전파연구소 양미숙 주무관]